

■ 판례 동향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전제조건인
‘부정한 행위’ 판단기준

■ 품목분류 동향

제8405호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개정법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위해 252조 원 투입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흥식

총괄 나영주 lordme@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월 13일(통권 제2114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위해 252조 원 투입

06 Weekly News**14 현장 특파원****관세행정실무해설**

- 20** 관세행정안내
이산화탄소 주입 공정의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27** 질의응답사례
FTA 사후적용 시 서류

판례동향

- 30** 관세판례해설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전제조건인 '부정한 행위' 판단기준

품목분류동향

- 49** 품목분류해설
제8405호[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65** 세번 바로잡기
무스탕이 콩글리시?
- 67** 상식 밖의 상품학
바나나 한 개를 86억 원에 구입한 사업가

최신개정법령

- 70**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71** 입법예고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 위해 252조 원 투입

산업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6,8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러·우 전쟁, 중동사태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글로벌시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 12개월 모두 수출 플러스와 흑자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우리 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시장의 불확실성을 견어내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 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 등 4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및 과학법(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 시 우리 對美 투자기업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전략적인 對美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범부처 T/F 운영을 통한 韓·美 조선험력 패키지 준비 등 韓·美 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美·中 갈등 심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무역위원회를 전면 확대 개편하고 덤핑조사 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 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GCC·UAE·에콰도르 등 既 타결 협정을 조속 발효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을 4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환율 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 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

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 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판매지원 확대 등 수출 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 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 지원하는 한편, 올해 2월에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등을 제정해 지원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이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도 연내 수립한다.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0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한 약 9,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차질 없이 완료해 철강산업의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경제안보 강화와 사업혁신 기반 구축도 강화한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 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 주고, 오는 6월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기술 보호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 R&D의 경우 상반기 중 신규 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40종의 첨단 분야 국제표준도 개발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인 가운데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기울인다. 전기요금은 지역별·시간대별 수급 여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LNG 용량시장, 신재생 RPS 개편 등을 통해 발전시장 진입 단계부터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신청을 거쳐 2분기 중 지정을 완료한다.

| 하구현 기자 |

문신용 염료·구강관리용품 수입 시 정밀검사 대상으로 변경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또 문신용 염료는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 방지를 위해 무균 상태가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지정 위생용품인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기준이 확립됐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제품으로 관리해 온 수입 문신용 염료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과 용도·제형 등이 동일한 제품은 정밀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했던 성인용 구강관리용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검사 없이도 수입이 가능했다.

앞으로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검사의 유효기간은 문신용 염료 3년, 구강관리용품은 5년이다. 정밀검사 유효기간 내에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한 문신용 염료는 제조국·국외제조업소·원료명이 같은 제품인 경우, 구강관리용품은 제조국과 국외제조업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다. 단 치실은 제조국, 국외제조업소, 원료명이 동일해야 서류검사로 수입 가능하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의 조건부 先통과 허용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에 따라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 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최소 14일 이상 소요되는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금속 결과가 적합하면 우선 통관을 허용하되 무균시험 결과 확인 전 유통·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4개월, 3차 영업소 폐쇄' 등으로 신설한다.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부적합률이 낮고 제조 환경에 따른 품질 변화가 적은 점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선해 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위생 물수건은 미생물 부적합 우려로 기존대로 1개월 주기를 유지한다.

식약처는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제조·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2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서남아 제2 시장 파키스탄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서남아시아 제2의 거대 시장인 파키스탄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개시됐다. 우리는 수출 잠재시장을 확보하고 파키스탄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잠 카말 칸 파키스탄 상무장관이 1월 9일 서울에서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세계 5위인 2억 5,000만 명의 인구 대국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석탄, 천연가스, 구리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 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디지털·IT,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해당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방글라데시와의 협상 개시에 이어 이번 파키스탄과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서남아 대표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OTRA·IBK기업은행,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IBK기업은행이 국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KOTRA는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서 IBK기업은행과 '혁신기업 글로벌 진출과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OTRA는 국내 혁신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전시회 사업과 혁신상 수상 지원 사업 등 마케팅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최근 IBK벤처투자를 출범해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의 강점을 연계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진출 유망기업 발굴, 혁신기업 해외 진출 지원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CES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CES는 매년 세계 각국의 혁신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글로벌 박람회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장이다.

KOTRA와 IBK기업은행의 협력은 이러한 CES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맞물려 혁신기업들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하구현 기자 |

‘굴’, 세계 1위 수출국가 도전 … 2030년 수출액 1억 6,000만 달러 목표

고부가가치 개체굴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김에 이어 굴도 대표 먹거리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세계 굴 수출국가 1위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에서 모두 즐겨먹는 수산물로 세계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굴 수출국이다.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은 2030년까지 굴 생산량 10만 톤 증산(2023년 30만 톤 → 2030년 40만 톤), 2030년까지 굴 수출액 2배(2023년 8,000만 달러 → 2030년 1억 6,000만 달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포함됐다.

이중 글로벌 수출시장 공략과 기존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개체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적극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한 전체 굴 수출액 중 71%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등 기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높인다. 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수출업체에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혁신기업 발굴부터 판로,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활용해 혁신제품 발굴부터 공공판로, 해외진출까지 통합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버팀목으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매년 확대되는 혁신제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전문기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한국조달연구원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최종 지정돼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된다. | 하구현 기자 |

달라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1회차 참여기업을 1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종합지원사업은 절차가 복잡·다양하고 진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해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작년 처음 도입했다.

작년 사업을 통해 인증,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등 47개社 대상 7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평가한 조달청은 올해는 서비스별 지원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출 서류와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개선했다.

4회차까지 모집하는 올해 지원사업은 1월 17일까지 1회차 기업 모집 후 2월부터 본격 지원하며, 2회차는 2월 7 ~ 16일, 3회차는 3월 7 ~ 16일, 4회차는 4월 8 ~ 17일간 각각 모집한다.

지원규모는 35개社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e-나라도움 활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공지사항에서 상세 요건 및 신청서류를 확인해 (재)한국조달연구원으로 이메일(export@kip.re.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KOTRA, 동유럽 진출 위한 폴란드·헝가리 투자실무가이드 발간

동유럽 지역 투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실무가이드가 발간됐다.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폴란드와 헝가리에 진출할 의향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의 최신 투자 진출 정보를 담은 가이드를 각각 발간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중동부 유럽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폴란드는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IT, 방산 등 분야에서 뛰어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을 제공하며, 헝가리 또한 높은 생산성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력,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자, 2차 전지, 의료·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KOTRA 홈페이지 무역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투자실무가이드 폴란드 편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진출 기회 확대에 따른 최신 정보가, 헝가리 편에는 작년 10월 헝가리 진출기업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한 진출 정보가 담겼다.

| 하구현 기자 |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의정부교도소로 감치 … 관세청 집행 최초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1월 8일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관세법」에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세청이 집행한 첫 감치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 「관세법」(제116조의 4)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3회 이상)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2억 원 이상)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 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정세액을 체납했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 원), 주식(23억 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며 가택수사 결과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의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설 명절 24시간 통관 특별지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1월 28 ~ 30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수출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이달 14 ~ 27일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 → 오후 8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이달 10일과 17일, 24일 등 3차례에 걸쳐 조기, 참깨, 들깨 고춧가루, 된장, 간장, 문어 등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1주일 간격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세계인 입맛 잡은 K-라면” K-푸드 플러스 수출액 130억 달러 돌파

2024년 농식품·전후방산업 역대 최고 실적, 라면 수출액 전년 대비 31.1% 증가

K-라면(한국 라면)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작년 농식품 및 스마트팜·농기자재·동물용 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2023년보다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액은 99억 8,000만 달러, 전후방산업은 30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중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출 성장률의 3배에 가까운 증가율로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주도한 수출 1위 품목은 라면이다. 라면은 2023년도 실적인 9억 5,000만 달러를 10개월만에 초과 달성해 2024년 연말까지 12억 5,000만 달러 수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31.1% 증가한 것으로 해외에 라면이 등장한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가 확산되고 SNS에서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7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라면 제조사의 2024년 매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특히 삼양식품의 경우 불닭볶음면 인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더해져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1억 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상위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은 쌀가공식품으로 전년 대비 38.4% 성장한 3억 달러 수출됐다. 특히 미국에서 글루텐프리 건강식이며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토대로 전년 대비 51.0% 성장했다.

미국, 중국, ASEAN, 유럽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는데 특히 냉동김밥 인기가 눈에 띈 미국, 건강식에 관심이 큰 유럽, 라면 수요가 늘어난 중남미에서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액 1위 국가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으로 집계됐다.

농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펫푸드,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2.4% 감소에 그쳤다. 특히 농약은 작년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돼 61.7% 증가했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국내외 통상환경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한류 및 K-푸드의 인기, 농기계 시장의 성장세 등을 기회 삼아 지금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박람회·마케팅 지원,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 341억 달러, 2년 연속 300억 달러 넘어

전통적 강세지역 중동 벗어나 동유럽·동남아로 플랜트 시장 다변화에 주목

작년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 금액이 총 34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통적 수주 강세를 보이는 중동지역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기여한 가운데 진출 시장도 중동지역을 벗어나 동유럽, 동남아 지역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수주한 금액이 총 340억 7,000만 달러, 한화로 약 50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총 수주 금액인 302억 3,000만 달러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64억 7,000만 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플랜트는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설계, 시공, 유지·보수가 포함된 융합 산업으로, 기자재 생산, 엔지니어링, 컨설팅, 파이낸싱, 인력 진출 중 사업 수주에 따른 전후방 효과가 큰 분야다.

작년 플랜트 수주 성과는 우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중동 지역에서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주 금액 340억 7,000만 달러 중 약 46%인 155억 2,000만 달러가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이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삼성E&A와 GS건설이 73억 달러로 수주한 사우디 파딜라 가스 플랜트 증설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해외 프로젝트 중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191억 달러), 2012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77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초대형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작년 11월 삼성물산이 28억 4,000만 달러로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복합 발전소는 국내 컨소시엄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국내 기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수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한편 작년 우리 기업은 동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도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중동 중심의 수주에서 벗어나 플랜트 진출 시장을 한층 다변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16억 8,000만 달러) 수주 등 동유럽 지역에서만 총 47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유럽에서의 수주 금액은 2023년 대비 250.6% 증가한 6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삼성E&A의 말레이시아 피닉스 바이오(SAF, 지속가능항공유) 정유 시설(9억 5,000만 달러) 수주 등에 힘입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2023년 대비 79.1% 증가한 33억 9,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생산설비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플랜트 수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주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日·호주·뉴질랜드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개정

관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RCEP(역내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의 자율증명을 위한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의 작성방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도 RCEP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관세청은 개정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개정된 서식을 일부 변경해 사용하더라도 RCEP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2022. 5. 18. 제정)은 1월 1일자로 폐지됐으며, 개정된 권고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김 우 철**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구 천**
 관세청 법무담당관 **방 대 성**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 지 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 진 선**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 용 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 현 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윤 지 혜**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최 문 기**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 주 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 태 용**
 관세청 원산지검증과장 **마 순 덕**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신 숙 경**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 **김 희 리**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2국장 **이 원 상**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문 병 주**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유 태 수**
 서울세관 조사2국장 **조 한 진**
 천안세관장 **김 경 호**
 동해세관장 **신 각 성**

부산세관 감시국장 **이 소 면**
 부산세관 심사국장 **장 용 호**
 부산세관 조사국장 **염 승 열**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윤 청 운**
 인천세관 심사국장 **김 태 영**
 인천세관 조사국장 **반 재 현**
 수원세관장 **이 동 현**
 구미세관장 **김 종 렬**
 광양세관장 **김 익 현**
 여수세관장 **정 영 진**
 군산세관장 **이 준 원**
 평택세관장 **민 희**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장 **김 인 순**
 관세청 **이 철 훈**
 관세청 **양 승 혁**
 관세청 **박 지 영**
 관세청 **나 종 태**
 관세청 **최 현 정**
 관세청 **백 광 환**

<2025년 1월 13일자>

일주일 앞둔 트럼프 2기 “강력한 통상 압박 임박” 美 통상 전문가 3인의 조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는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취임식을 열고 집권 2기 활동을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고관세 정책을 예고한 만큼, 얼마나 정책을 강도 있고 빠르게 실행시킬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경제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측이 다분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저마다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협의에 나선 것과 달리 ‘코리아 패싱’이라고 언급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실행정부에 대한 로비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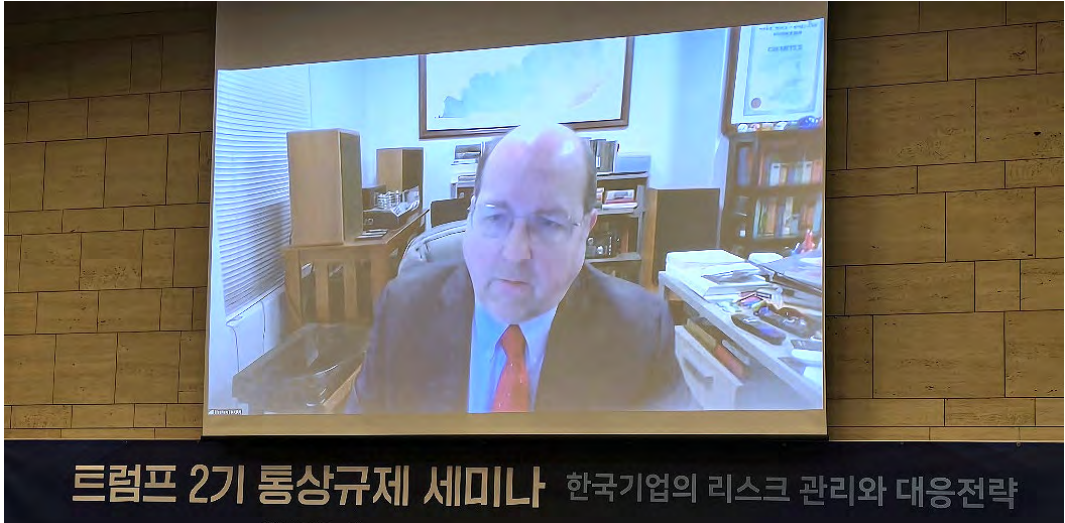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되고 국내 정치 상황마저 혼란한 가운데, 워싱턴에 정통한 통상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언을 들어봤다.

‘자국 우선주의’에 들이닥칠 고관세 폭풍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감면, 보편적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후규제 완화 등 일곱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한국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관세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다. 美·中 관계 악화는 한국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12월 진행된 ‘한국경제인협회·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공동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정책이 실행되면 한국의 對美 수출이 최대 158억 달러(약 13.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분야는 조선, 플라스틱, 원자력이었다. 그는 “우리가 경쟁우위가 있어 미국의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방산, 조선, 원자력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별 맞춤형 공급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1기 통상 정책 참모 스티븐 본 “美 행정부와 빠르게 소통 나서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한 스티븐 존 전 USTR 대표대행(출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경험했던 관세 인상과 통상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정책 참모였던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은 지난 12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통상규제 :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무역국에 강경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는美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도 행정부 권한으로 관세를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며 그의 탄탄한 정치기반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을 뿐 아니라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상황이다. “법적인 권한에 정치적 기반도 탄탄하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다”라며 강경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 관계자들과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美 의회 보좌관 출신 폴 공 “조공의 시대 시작됐다”

미국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및 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통해 “미국과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각국 정부가 앞다퉈 미국으로 협상팀을 파견해야 할 만큼 강력한 통상 압박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 시기에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가 활발했지만, 정권 교체 후 그간의 투자 실적을

어필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가 무기화되면서 협상의 난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폴 공 연구원은 이제 ‘조공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서로 주고받는 ‘win-win’의 관계가 아닌 ‘갇다 바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를 더 수입하겠다고 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핑계가 있었지만, 중국은 약속한 수출 규모의 60%밖에 지키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는 부족한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원 의원회에서 20여 년간 보좌관으로 지낸 폴 공 연구원(출처 : 주간 관세무역정보)

그렇다면 우리의 조공은 어떤 모습이 될까? 폴 공 연구원은 조선업을 지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선 축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직접 언급한 점은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조선업이 뒤떨어진 데다 적자 산업인 탓에 안보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라는 것.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에 무역적자, 방위비 등 수출통제를 무기 삼아 많은 부문을 협박할 수 있는 만큼 조선업에서 미국과 협력하며 관세 협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1월 6일(현지시간) 라디오 ‘휴 휴잇 쇼’에 출연해 해군을 재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곤 했다. 우리는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고 싶고 아마도 배를 만드는 데 동맹국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중국이 미국의 230배가 넘는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는 동안 미국은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해 많은 국가가 분주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혼란이 발생하며 대응이 무척이나 늦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폴 공 연구원은 멕시코나 캐나다 등이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지켜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1월 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폴 공 연구원은 "멕시코나 캐나다가 관세를 낮추려고 적극적으로 로비할 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참여도 못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협상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이 꼭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울촌 박주현 변호사 "환경 정책은 분명 후퇴. 다만 EU 고려하면 유지는 해야"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은 후퇴할 전망이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연수 중인 법무법인 울촌 박주현 변호사는 대한상의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 트럼프 2기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에너지 단가 하락'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와 비교하면 주요 산업의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에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곧 들어설 트럼프 2기는 화석연료 산업의 활황기가 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것이 트럼프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화석연료를 채굴해 에너지 단가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과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IRA 또한 폐기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바이든 정부의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작년 3월 美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기후공시 규칙 또한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다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박 변호사는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봤는데, 화석연료로 회귀, 저렴한 에너지원의 활용은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원자력 관련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IRA 혜택 축소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그는 "텍사스나 뉴멕시코 측에는 태양광 수요가 많다.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산업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지만, 향후 공개될 세부 정책 방향을 지켜보고 수출 다변화, 원가절감 계획 등 위험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I INTERVIEW

(관세무역정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탈친환경 기조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박주현 변호사) 미국이 친환경 기술에 대해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쌓인다면, 또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전기차나 친환경 산업의 발전 속도가 조절될 뿐 산업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유럽연합(EU)은 여전히 환경을 비롯해 ESG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기후공시 또한 미국에서 중단되더라도 EU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시간을 번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EU나 아시아 등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하라. 다만 미국이 우려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나 단체와 공급망은 거리를 두고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협력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되겠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 또한 IRA는 폐지 또는 그에 버금가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은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IRA보다는 변경 가능성이 작겠지만 보조금 혜택이 미국 기업 내지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新舊 행정부 간 환경·에너지 정책 비교 ●

주제	트럼프	바이든
에너지	전통 에너지 산업(화석연료) 중흥 바이든의 그린뉴딜 일체 중단 각종 친환경 명목의 비시장적 규제 철폐 (단, 원자력 산업은 지원)	IRA에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지원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IRA	역사상 최고의 세금 인상법 중국 등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IRA 폐지/축소	2022. 8.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법 중 하나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목적	내연차 연비 규제 취소, 휘발유 가격 인하 등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확대 → 전통적 자동차 산업 기반 및 노동자 지지 결집	내연차 연비 규제 기업 평균연비규제(CAFE)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준수
전기차 전환 정책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중흥 정책 전면 백지화 →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 기업, 노동자 권익을 훼손하고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부양한다 고 비판	2032년까지 전기차 67% 비중 목표 (2030년부터 기준 강화)

출처 : 법무법인 율촌 박주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송지연 변호사는 “트럼프 2기에는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관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수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는 명백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제안할 수 있는지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검토하고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새롭게 형성되는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 발굴하는 한편, 통상 규제를 검토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창완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한미 FTA 전망 및 활용방안’에 대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FTA의 실효성이 도전받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체결한 FTA는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EU와 중국 간의 상호 보복관세가 실제 부과되고, 지속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율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를 분석·제공하고, 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대표 로펌과 공동으로 법률자문, 세미나를 지속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전 세계가 들쭉이는 가운데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 적용 대상이 핵심 품목에만 한정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1월 7일(현지시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전히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만, 모든 수입품이 아닌 특정 분야의 핵심 품목에만 제한해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관세 적용 대상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 의료기구 및 의약품, 배터리·희토류 광물 등 에너지 생산 분야 등이 꼽혔다. 매체는 수입식품이나 전자제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새 정부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며,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즉각 부인했다.

그런가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은 美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메가(mega)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CNN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적용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는 관세에 대한 호감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관세와 관세만으로 미국에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관세는 우리의 부채를 갚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 김성은 기자 |

이산화탄소 주입 공정의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한·베트남 FTA
질문	탄산과실주스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CO ₂)를 주입하는 공정이 있는데 해당 공정이 한·ASEAN, 한·베트남 FTA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탄산과실주스의 CO ₂ 주입 공정이 특수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기 두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충분가공원칙, 불인정공정기준

(1) 개요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상품 요건이라는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으로 충족됐는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무역에 관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협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FTA 실무상 원산지 상품 요건에 관한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결국 각 FTA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각 협정에 존재하는 원산지규정)을 전체적으로 만족시켜야만 원산지 상품으로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협정의 원산지규정에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이 존재한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기준은 ①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원칙(공통기준)과 ② 기본원칙 또는 품목별기준의 엄격성 또는 원산지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분야별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2) 충분가공원칙 및 불인정공정기준

공통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역내생산원칙(영역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존재한다. 그중 충분가공원칙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다. 원산지라는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제조·가공이 수행되어야만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부속서 2-가(부가규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가공’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FTA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일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충분가공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는 충분히 가공됐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한·미, 한·캐나다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등은 ‘불인정공정’으로 표현하는 반면, 한·EFTA, 한·EU, 한·튀르키예 FTA 등은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표현해 해당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중 FTA, RCEP은 ‘최소 공정 또는 가공’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다.

많은 FTA가 불인정공정기준을 ‘열거규정’ 형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FTA 불인정공정기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충분가공원칙의 개념 및 불인정공정이 도입된 것은 역내가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고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제품이 아닌 원재료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불인정공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된다. 첫 번째로 불인정공정기준은 FTA 담당자들이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보호장치로 활용된다. 즉, 당사국에서 원산지가 아닌 재료에 대해 수행된 사소한 가공 작업에 의해 원산지 지위가 부여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부정적 테스트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상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인정공정기준 이상의 공정이 수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불인정공정기준은 누적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모든 FTA에서는 재료누적을 활용할 수 있고, 일부 협정에서는 공정누적 또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료누적을 활용할 때 한 당사국에서 원산지인 재료가 다른 당사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그 원산지 재료에 대해 수행된 유일한 작업이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된다면 누적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제품은 결과적으로 원재료 수입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질문 & 답변 사례에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고순도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 생산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RCEP의 원산지 재료 생산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차별(RCEP 제2.6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CEP에 따르면 양허표상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재료 생산품(PE)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원산지 상품의 RCEP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로 인정되지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해 최소공정(불인정공정기준) 외에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결국 ‘누적’이 적용되는 원산지 재료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서 최종 수입국의 양허표상 국가별 관세차별이 이뤄지는 품목이라면, 불인정공정 여부를 두고 최종 원산지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 질문 & 답변에 대한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및 관련 사항 해석

질문 & 답변 사례에서는 탄산과실주스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 CO₂를 주입하는 공정이 있는데 이러한 공정이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고 있다.

현재의 질문 & 답변 사례에는 완제품인 탄산과실주스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불인

정공정기준에 해당되면 그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 전에 일반기준상 충분가 공원칙을 충족하고 더 정확히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란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불인정공정’, ‘불충분공정’ 또는 ‘단순가공’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인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

일단 한·ASEAN 및 한·베트남 FTA에서 CO₂를 주입하는 것이 불인정공정기준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한데 관세청의 답변을 살펴봐도 해당 공정이 불인정공정기준 중 어떠한 규정을 살펴봤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에 관한 규정이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단순한’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해)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하며, 한·ASEAN FTA에도 유사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탄산과실주스의 CO₂ 주입 공정이 특수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라면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두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혼합’의 규정으로 미뤄 볼 때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이 불인정공정기준에 해당되는 단순한 혼합이나,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CO₂를 주입하는 경우 단순한 혼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불인정공정기준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

불인정공정기준은 원산지 판정 및 누적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원산지 규정의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규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에 관한 주요 고려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불인정공정’이라는 용어 자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생산’이라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정의)에서는 “생산이란 재배, 어로, 사육, 수렵,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해에서는 생산은 수확, 덧사냥, 생산, 번식 및 분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종류의 작업이나 가공(any kind of working or processing)을 생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불인정공정기준인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따라 작업 또는 가공(working or processing)이 원산지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상품(제품)으로 인정하기 힘든 불충분한(insufficient) 작업 또는 가공만 이뤄졌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불충분한 생산’은 개별적 또는 조합해 수행될 때 당사국에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최소한의 작업만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불인정공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영국의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서의 ‘불충분한 생산’에 대한 지침(Guidance on ‘Insufficient production’)에 관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TCA에서 생산은 조립도 포함하거나 생산의 개념에는 특정 제품을 얻기 위해 특정 조건(예 : 건조, 숙성 또는 노화를 위해 방의 습도나 온도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을 마련하는 작업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생산이 아닌 것에 대한 예시로서 운송 또는 보관 중 원산지 폭발성 화학물질의 전문적 취급은 ‘생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EU의 원산지 제품이 영국으로 수입돼 그곳에 보관되고, 영국에서 폭발성 화학물질에 대해 이뤄지는 유일한 활동이 전문적 취급이라면, 해당 당사국(영국)에서 생산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이는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을 판단하기 전에 일단 불인정공정기준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생산’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로 ‘단순한(simple)’이라는 표현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다. 각 협정의 불인정공정기준에 ‘단순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각 협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유사하다.

예를 들어 한·베트남 FTA에서는 ‘단순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하지만, 여기에는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에서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등 여러 가지 불인정공정기준에서 ‘단순한’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special skills), 기계(machines), 도구(apparatus), 또는 장비(equipment)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하며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기술(special skills)에 관해서는 TCA 지침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존재한다. 예시에서는 영국 원산지 테라코타 화분이 EU에서 손으로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칠해지는 경우 이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으로서 TCA에서의 누적적용을 통해 EU 원산지 제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 디자인으로 칠하는 것은 단순한 페인팅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므로 불충분한 작업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즉, 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페인팅 공정은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계(machines), 도구(apparatus), 또는 장비(equipment)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불인정공정기준 해당 여부를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계 등의 사용 여부다. 아주 단순화해 기계를 사용해 공정이 수행됐다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다고 ‘아주 쉽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TCA의 지침에서는 이러한 기계 등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작업을 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즉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는 제품을 그대로 얻기 위해, 즉 제품이 그 특성(characteristics)이나 속성(properties)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기계 없이도 유사한 특성이나 속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는데, 배(Pears) 4개를 한 묶음으로 폼 패킷(foam packets)에 넣고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plastic film)으로 덮는데, 이러한 포장 공정이 기계를 통한 자동화 공정으로 수행되는 경우 이를 기계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기계화 공정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수작업으로 진행해도 결과물이나 특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즉, 구체적인 생산 방법이 ‘불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인 생산 과정, 기계의 사용 여부, 그러한 기계 사용이 제품의 특성이나 속성에 미치는 영향,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수행돼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불인정공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된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해 EU 등으로 수출할 때 이에 대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TCA의 지침과 같은 불인정공정기준별 사례 및 ‘단순한’에 대한 해석 등이 제시된 지침이 마련된다면 FTA 관련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관리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FTA 사후적용 시 서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①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② 원산지증명서(법 제9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 신청서
- ④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 * 제2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원본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 화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절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입통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신청서가 수리되면 유니패스 > 신고서 작성 > 환급 > 과오납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스템 사용 문의 : 기술지원센터 1544-1285).

제출된 서류는 통관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및 사후협정 적용 여부를 심사해 환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수입요건 / 팜올레인의 수입요건

제1511.90-1000호에 분류되는 팜올레인의 수입요건이 알고 싶습니다.

제1511.90-1000호에 분류되는 팜올레인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산지 / 원산지 표시

**원산지를 'CO : US' 또는 'COO : US'로 표기해도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따라서 문의하신 'CO : US' 또는 'COO : US' 등의 문구는 국제상거래 관행상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통관 / 특송물품의 DDP 조건

**이베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품 결제 시 관·부가세를 함께 지불했다면,
통관 시 별도로 내야 할 세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만약 DDP 조건이라면, 통상 해외 판매자가 수입국인 우리나라 관세 등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DDP 조건 : 관세지급 인도조건으로 수입국의 관세 등을 포함한 비용을 해외 판매자(SHIPPER)가 부담하는 것

또한 관세 차액 등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등도 해외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수통관 2과 : 032-723-5203~7/5228, 032-722-4825(1과), 032-723-5274, 5258, 5252(3과)
※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 전제조건인 '부정한 행위' 판단기준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관0137(2024. 4. 22.) 대상결정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머리말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정한 행위 ●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1. 이종송품장·이종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최근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가 있어, 이번 호에서는 어떤 경우가 '부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품목분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바,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의 법적 성격과 청구법인의 품목번호 수입신고의 법률적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사건 경위

청구법인은 2020. 9. 23.부터 2023. 3. 14.까지 중국으로부터 '모듈화된 촉매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서포트된 촉매'로 봐 HSK 제3815.19-9000호(이하 '제3815호')로 분류해 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신고했고, 처분청(이하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세관은 2023. 3. 24. 수입신고 건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듈 형태의 여과기 부분품'으로 제8421.99-9099호(0.8 ~ 3.2%, 이하 '제8421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해 직권 정정했고 2023. 6. 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고의로 저세율이 적용되는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세관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부정한 행위로 제3815호로 신고해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봐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적용해, 2023. 8. 16. 관세, 부가가치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 처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2023. 11. 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III. 쟁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부족세액의 10%)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부족세액의 40%)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IV. 당사자 주장

1. 청구법인 주장

■ 주장 요지

- (1) 청구법인은 제8421호 물품을 부정하게 제3815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다.
- (2) 세관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위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 (3) 세관은 청구법인이 관세사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한다.
- (4) 제3815호와 제8421호는 세율차가 미미해 관세포탈 실익이 없다.
- (5)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는 청구법인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다.
- (6)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과거 수입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1) 청구법인은 제8421호 물품을 부정하게 제3815호로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탈질촉매제’를 ‘촉매제품’과 ‘모듈제품’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국내 판매 시에는 ‘촉매’, ‘Catalyst’, ‘SCR촉매’, ‘SCR설비 촉매’ 등으로 혼용해 부르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물품은 거의 대부분 모듈화된 촉매제품으로서 수출 상대국인 EU에서도 공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생산한 모듈화된 촉매제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한·EU FTA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청의 ‘FTA활용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배정된 관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관세사는 제품 생산과정과 자재명세서, 제조 공정도 등을 확인하고 경합세번으로 HSK 제3815.19-9000호(촉매), 제8421.39-9090호(여과기), 제8421.99-9090호(여과기 부분품)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FTA활용지원 사업결과보고서’에 제3815.19-9000호로 기재해 세관에 제출했다.

세관 조사직원은 청구법인에게 “2010년 컨설팅을 받을 당시 컨설팅 관세사가 ‘촉매물질을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 등에 장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모듈은 기계장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라고 검토를 했는데, 왜 제8421호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해 당황했으나, 그후 ‘FTA활용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 제3815호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컨설팅 관세사는 제조현장에서 제품 생산과정과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직접 확인한 결과, 청정기에 장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봐 최종 의견을 제3815.19-9000호로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 세관은 현장조사 및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듈화된 제품을 제8421.39호로 기재해 인증서를 발급했으며(2011. 7. 12.),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EU로 수출할 때 제8421.39호로 신고하게 됐다. 세관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서’를 검토하고, “탈질촉매로 분류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여과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기 등 기계로 봄이 타당하다”고 봐 제8421.39-9090호로 분류해 인증한 것으로 추측된다.

라) 청구법인이 2012년 관세평가분류원에 허니콤(Honeycomb)형 촉매제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고, 분류원은 제3815.19-9000호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 11. 27.자 대구세관장의 인증서에 추가해 제3815.19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마) 그후 청구법인은 2020년 9월경 모듈화된 촉매제품을 처음으로 수입하면서 모듈이 되더라도 촉매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기에 모듈화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제3815호로 신고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사나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중국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도 제3815.19호로 발급돼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모듈화된 A를 수입해 가는 EU에서도 제3815.19호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모듈화된 촉매제품이 제3815호가 아닌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모듈화는 허니콤형 촉매가 세라믹 제품으로서 파손되기 쉬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철자재로 촉매 단품 외부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모듈화를 한다고 해서 촉매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고객사의 SCR시스템 설치를 용이하게 할 뿐이다. 청구법인은 모듈화된 촉매제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본질적인 특성이 탈질촉매에 있다고 생각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다.

바) 청구법인은 2023. 1. 31. 거래 관세사로부터 “다른 회사에서 수입한 ‘모듈화된 촉매제품’에 대해 분류원의 제8421.99-9099호 결정이 있었으니, 향후 수입신고 시 해당 품목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2023. 3. 24. 이후에는 제8421호로 신고했다. 청구법인이 관세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바로 해당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청구법인이 AEO인

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분류원의 사례가 정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보정과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에 충분한 검토 후에 수입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세관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위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

세관이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 즉 세액계산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세액 신고를 했다는 것을 세관이 입증해야 한다. ‘부정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① 이증송품장·이증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관은 청구법인 행위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세관은 청구법인이 관세사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근거는 10여 년 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컨설팅을 했던 관세사가 개인 의견으로 언급한 3개의 경합된 품목번호 중 한 개의 품목번호가 2021년 분류원이 분류한 품목번호와 일치했다는 사실뿐이다. 세관은 청구법인에게 관세사의 컨설팅 보고서 중에 간단하게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작위 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4) 제3815호와 제8421호는 세율차가 미미해 관세포탈할 실익이 없다

제3815호와 제8421호의 세율 차이는 2023년의 경우 0%와 0.8%로 미미하고, 2024년부터는 모두 0%다. 성실하게 경영을 해 온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5)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는 청구법인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다

가) 법원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 결정은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225 판결). 품목분류는 새로운 의견 또는 기타의 이유로 결정내용이 바뀌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분류원의 품목분류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견본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다른 물품에 대한 ‘확장성’도 없다.

나) 세관이 처분 근거로 삼은 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가 쟁점물품에 그대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8421호로 수입신고하고 있는데, 분류원이 유사물품을 제3815호로 품목분류했을 경우 청구법인은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과다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한다면 세관은 두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이 명확하다.

다) 관세청은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를 제8421.99-9099호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회에도 동일한 물품에 대해 구성위원의 새로운 견해에 따라 품목번호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의 취지를 쟁점물품에 적용하면 “허니콤형 촉매는 세라믹 제품으로 파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른 재료(각종 철자재)로 테두리를 부착했으나, 이는 허니콤형 촉매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탈질촉매에 있으므로 제3815.1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분류원의 분류사례를 살펴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분류해 신고한 것도 잘못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토너가 충전된 플라스틱제 카트리지’를 “디지털 복합기용 카트리는 복합기와 상호작동하기 위한 전기적 요소나 기계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토너를 담기 위한 용기에 해당하고, 토너(재료)와 카트리지(용기)는 내용물인 소모성 재료(조색제)에 해당한다”고 봐 제3707호로 분류했고, 이 외에도 분류원은 2013년 ‘음료용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철제 실린더’를 “액화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철강제 실린더는 포장용으로 사용되지만 재사용되지 않는 용기이므로 내용물인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고 봐 제2811호로 분류한 바 있다.

마)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된 모듈화된 촉매에 대한 외국의 HS 사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수출자는 모듈화된 촉매를 제3815.19호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제3815.19호로 발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만은 2013년 촉매제를 설치하고 운반 및 보호를 위한 촉매블록을 제3815호로 분류했고, 프랑스는 2014년 촉매를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지지체에 지지된 촉매제를 제3815호로 분류했으며, 일본은 2015년 배연탈초 장치용 모듈로 조립된 허니콤 구조의 촉매조제품을 제3815호로

분류했다.

(6)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를 과거 수입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욱이 분류원이 2022. 4. 15. 처음으로 ‘모듈화된 촉매’가 제8421호로 분류된다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0. 9. 23. 이후 수입한 모든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 이 건 처분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세관 의견

■ 주장 요지

-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 (2) 청구법인은 관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저세율의 촉매제로 신고했다.
- (3) 세관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가) 청구법인은 ‘FTA활용지원 사업결과 보고서’와 같이 ‘모듈화된 물품’을 제3815.19-9000호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검토대상은 ‘SCR탈질촉매제’다. 또한 보고서의 ‘품목분류 검토’ 항목을 보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 형태일 경우에는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에 장착하는 모듈 형태로 특수제작한 경우에는 제8421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어, 관세사가 청구법인에게 ‘촉매제’와 ‘모듈화된 촉매제’의 품목분류가 상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적으로 FTA활용지원 컨설팅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세관에 기업의 원산지 증명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세관은 인증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업이 해당 품목에 대해 원산지 판정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증한다. 청구법인은 세관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화된 탈질촉매제에 대해 제8421호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나, 인증수출자 신청물품을 제8421호로 신청한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세관은 FTA활용지원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지 요건을 심사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줬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2년 탈질촉매제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촉매제가 분류되는 제3815호로 품목번호를 결정받았고, 이에 대해 이미 인증받은 모듈화된 촉매제를 제3815호로 추가해 인증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도 사안이다. 인증수출자

인증은 다수 품목을 신청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3815호의 물품에 대해 한국산임을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받은 것이지, 모듈화된 촉매제를 제3815호로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의 통관책임자는 임원 ○○이다. ○○는 2010년 FTA활용지원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담당자이며, 당시 FTA활용지원 컨설팅과 관련해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수료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는 과거 FTA 컨설팅사업 신청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 원산지관리전담자로 필요한 교육을 받아 SCR탈질촉매제와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을 각각 제3815호 또는 제8421호로 분류한다는 사실을 2010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로서 자신의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빙하는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서류인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법인이 2011년 6월경 작성한 원산지소명서 ‘7번란 주요생산공정’에 “1. 혼합(건식, 습식), 2. 토련, 3. 압출, 4. 1차 건조, 5. 2차 건조, 6. 컷팅, 7. 모듈”이라고 기재돼 있어 원산지소명서의 대상물품이 쟁점물품과 같은 ‘모듈화된 촉매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상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재하는 소명서 4번란에는 제8421호가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청구법인은 2011년에도 이미 쟁점물품 품목번호가 청정기·여과기에 해당하는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관세포탈 목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명과 품목번호를 저세율의 촉매제로 신고했다

가) 청구법인의 거래 관세사가 2023. 1. 31. 청구법인에게 모듈제품이 제8421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이 인상됨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는 “기존 물품의 경우 MODULE 제품인지 확인이 어려우므로 변경된 제8421호를 적용하여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신고 내용에 MODULE이란 표현이 없으므로 해당 신고제품과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움)”라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품명과 규격에 고의적으로 ‘MODULE’이라는 단어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추징을 회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더욱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2023. 1. 31. 이후부터 2023. 3. 14.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호 등 7건에 대해 품명 및 규격을 위 메일과 같이 고의적으로 ‘MODULE’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제3815호로 신고한 사실도 있어, 청구법인은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낮은 세율의 품목번호로 신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분류원의 품목분류에 따라 2023. 3. 24. 수입신고분부터 쟁점물품을 제8421호로 수입신고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해당 수입신고 건은 세관이 품목분류 오류가 능성이 있는 물품을 지정해 수입검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세관이 촉매제로 신고한 내용과 달리

현품이 상이한 것을 확인해 제3815호에서 제8421호로 직권 정정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로 쟁점물품 품목번호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관이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한 2023. 6. 21.까지 청구법인은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AEO 인증 취지를 생각했다면 더욱 더 쟁점물품 품목번호를 정확히 신고했어야 한다.

마) 세관은 2023. 3. 7. 청구법인에게 2023. 1. 31. 이전에도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담당 관세사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는 등 세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입한 물품은 모두 모듈화하지 않은 허니콤 타입의 제품이고, 그 이전에는 모듈을 수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MODULE'이라는 단어를 수입신고 내용에서 고의적으로 제외해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은폐한바, 관세부와 근거가 되는 수입신고 행위를 부정하게 한 것이 명백하다.

바) 청구법인은 세관 조사 전까지 모듈화 여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촉매제와 쟁점물품에 대해 통칭해 부른다고 주장하나, 세관의 방문조사 시 확보한 '수입 진행일정.xlsx' 파일에서는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한 2020년경부터 '모듈완제품'으로 표기하고 SCR촉매제는 '단품'으로 표기하고 있어 두 물품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또한, 청구법인은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인 2023. 3. 27.부터는 쟁점물품을 청정기 부분품인 제8421호로 수입신고했다. 이때 중국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내용을 보면 쟁점물품 관세가 인상돼 추가 관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즉, 이전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815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음으로써 이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 청구법인은 SCR촉매제와 쟁점물품은 기능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파손방지 및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듈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촉매제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청정기·여과기의 핵심 기능적 구성요소(모듈)로 기계에 설치할 수 있게 부품 형태로 만들어졌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품목번호 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라 해당 품목번호가 달라졌을 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탈질촉매제가 분류되는 제3815호로 결정한 사례는 없다.

(3) 세관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청이 2022. 4. 15. 최초로 '모듈화된 촉매'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3. 이후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전체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규정돼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다른 업체가 쟁점물품과 아주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청정기 부분품인 제8421호로 회신받은 결과로, 이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에게 한 품목분류 회신을 청구법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이라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21호로 분류될 수 있음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탈질촉매제에 있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청정기 부분품인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은폐하려 한 사실로 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불리한 고세율의 품목번호로 결정되는 것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V.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

1. 주문

청구법인은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세관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사실관계

(1) SCR촉매제는 발전소, 소각시설 등에서 연료 연소과정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기 전 무해한 물질인 물과 질소로 환원해 배출시키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인 SCR설비에 설치돼 환원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다. 이러한 탈질촉매제는 활성물질인 바나듐, 텅스텐 등과 지지체인 이산화티타늄을 원료로 혼합한 파우더 형태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되며, 주로 촉매원료를 반죽 후 압출 성형해 벌집 모양인 허니콤 형태로 제조하거나 세라믹 담체 표면에 촉매원료를 코팅해 제조된다. 탈질촉매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5.19-9000호로 분류된다.

(2) 쟁점물품은 탈질촉매블록(단품)을 SCR탈질설비 반응기 내에 설치되도록 철자재 등으로 틀을 만들어 적층하고 그 중량을 지지하고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완충제를 블록 사이에 놓아 고정 및 조립해 모듈화(부품화)시킨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촉매제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청정기·여과기의 핵심 기능적 구성요소(모듈)로 기계에 설치할 수 있게 부품형태로 제조됐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취지로 2011. 7. 12.자 품목별 원산지인 증수출자 인증서, 2012. 5. 24.자 수출신고필증(제8421호로 수출신고), 2012. 11. 1.자 품목분류사 전심사 신청에 대한 회신, 2012. 11. 27.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15. 1. 28.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20. 6. 12.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2016. 1. 28.자 다른 회사의 촉매제품 품목분류사례, 2017. 9. 25.자 다른 회사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2022. 4. 15.자 다른 회사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2022. 5. 26.자 처분청의 분석결과 안내문, 해외 품목분류사례,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 및 변경고시 내용을 제출했다.

(4) 세관은 처분 정당성을 입증하는 취지로 범죄일람표, 탈질촉매제 품목분류 사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 청구법인의 FTA활용지원 컨설팅사업 참여 신청서, 청구법인에 대한 FTA활용지원 사업결과 보고서, 원산지소명서, 거래 관세사가 청구법인 상무에게 보낸 2023. 1. 31.자 메일, 세관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자료 제출 요구 공문,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 내용, 수입 진행 일정(엑셀 파일), 청구법인이 중국거래처와 단가와 관련 협의한 메일을 제출했다. 세관은 2023. 9. 19. 부산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법인 및 임원 ○○를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및 제279조(양벌규정)를 적용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했다.

(5)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정한 행위로 제3815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결정 이유

(1) 2010년경 작성된 컨설팅 관세사의 ‘FTA활용지원 컨설팅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제3815호로 분류한 물품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모듈제품이 아닌 ‘SCR탈질촉매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관세사는 “A를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에 장착하는 모듈 형태로 특수제작한 경우는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 청구법인이 2011. 6월경 작성한 원산지소명서에서 ‘모듈화된 촉매제’의 품목번호는 제8421호라고 기재돼 있는 반면, 2023. 3. 7.자 세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거래 관세사와 협의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2022년도에 수입한 물품은 모두 모듈화하지 않은 허니콤 타입 제품이고 그 전에는 모듈을 수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3) 청구법인은 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에 비취 2023. 3. 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쟁점물품을 제8421호로 수입신고했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세관이 2023. 3. 24. 물품검사를 진행해 제3815호에서 제8421호로 직권 정정했고, 세관이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한 2023. 6. 21.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4) 청구법인은 세관 조사 전까지 모듈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촉매제와 쟁점물품에 대해 통칭해 부른다고 주장하나, 세관의 방문조사 시 확보한 ‘수입 진행일정.xlsx’ 파일에서 쟁점물품을 2020년경부터 ‘모듈완제품’으로 표기하고 SCR촉매제는 ‘단품’으로 표기하고 있어 두 물품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취 보면, 세관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VI. 검토 의견

1. 세법상 ‘부정한 행위’에 대해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일탈행위로 탈세와 연결되며 결국 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비난을 받을 만한 고의적 탈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세법상 부정한 행위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했듯이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와 관련된 개념으로 예컨대 과세관청을 속여 처분을 받은 사기(詐欺)나 상대방의 오인, 착오를 야기하는 위계(偽計) 등과 같이 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고의적인 거짓, 속이기, 감추기와 관련 있는 사위(詐僞, tax fraud)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납세자는 부정한 행위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으로 3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①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② 가산세는 통상 10%에서 40%로 부과된다.¹⁾ ③ 조세포탈죄가 적용돼 벌금 또는 징역이 부과된다.

대법원은 장기부과제척기간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

1)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도입 취지는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탈세 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관세법」의 경우 2008. 12. 2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²⁾ 이러한 판시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를 일관되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적 계기를 마련했다.³⁾ 많은 학자들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죄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서로 같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조세범 처벌법과 「국세기본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규정 형식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개념도 법 영역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이른바 ‘법개념의 상대성’ 관점에 비춰 조세포탈죄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제재 정도와 성격에 차이가 있어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같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⁴⁾ 각 영역에 맞는 작동 영역, 제도의 목적과 취지, 잘못된 제재 사이의 균형 등을 고루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정한 행위로 방해된 조세부과권 행사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 새로 무거운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양 제도의 운용에 있어 모든 경우에 그 적용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양 제도가 갖는 차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한 가산세 제재를 가할 수 없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

반면, 대법원은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인지를 가릴 때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으며,⁶⁾ 이 외에도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과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와 자문료를 손금에 산입한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와 가산세의 부정한 행위를 딱히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⁷⁾

결국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각 제도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의 규정 형태가 동일하다는 문언 형식에 얽매어 양자에 대해 모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거나 혹은 모두 납세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다른

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2017. 4. 13. 2015두44158 판결 등 ; 대법원은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3)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舊 「국세기본법」에서 ‘부당한 방법’이라는 문구를 ‘부정한 행위’로 대체했다.

4) 양인준, ‘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세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5, 9면 이하

5)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정의 요청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⁸⁾ 세법은 직접적인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만약 그 행위가 반사회적·반윤리적으로 가벌성이 큰 경우에는 기소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세포탈범상 부정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요소” 즉 ‘적극적 행위’의 요소를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적극적 은닉 행위의 존부를 중심으로 조세포탈죄에서 실행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⁹⁾ 이러한 적극적 은닉 행위 요건이 고의를 전제로 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도적으로 은닉 적극성을 회피하는 소극적 은닉을 하면서 허위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론으로 하고 행정상 제재조치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¹⁰⁾

대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부담 감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¹¹⁾ 일반적 범죄론에 따라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형사법상 엄격한 고의(범의) 요건은 행정상 제재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²⁾

한편 부정한 행위를 공통 원인으로 해 동일한 조세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병과하는 것만 가지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¹³⁾

2. 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게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다. 가산세는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반 정도와 부과되는

8)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9) 안대회, <조세형사법>, 도설출판 평안, 2015, 327~328면, 김종근, <조세형사법 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 154~157면

10) 구진열, ‘가산세에 있어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21, 81~82면

1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1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1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제재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 과소신고세액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과소 신고가산세와 달리,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소득 등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훨씬 높은 40% 세율을 적용하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그만큼 비난 가능성이 큰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¹⁴⁾ 과실 영역을 벗어난 고의 영역에서 탈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실수 등 과실로 과소신고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의도하지 않고 실수를 범한 자와 속임수를 쓴 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부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제4호에서는 포괄적으로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¹⁵⁾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착오로 인해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해 과소 신고를 한 경우 역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¹⁶⁾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근거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조세를 포탈하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조세 포탈을 위해 ① 속이기, ② 감추기, ③ 없애기 중 적어도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납세자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과세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¹⁷⁾

그럼에도 관세행정실무에 있어 세관은 납세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납세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려는 행정편의적 처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바 있다.¹⁸⁾

1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15)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1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17) 통설과 판례는 입증책임에 대해 ‘법률요건분류설’에 취하고 있는데 해당 설에 의하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은 과세관청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고 비과세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은 청구법인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본 판결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요건에는 중대한 과실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납세자의 조세포탈 고의를 명백히 입증해야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근거를 4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과연 적정한지 살펴본다.

●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 ① ●

2010년 작성된 'FTA활용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제3815호로 분류한 물품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모듈제품이 아닌 'SCR탈질촉매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컨설팅 관세사는 "발전소 등의 탈질설비인 청정기에 장착하는 모듈형태로 특수제작한 경우는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유권해석은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⁹⁾ 즉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역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준수해야 하며 법원 역시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컨설팅 관세사가 모듈화된 제품에 대해 제8421호로 제시한 것은 관세전문가로서의 사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공적인 견해도 아니다. 설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표명을 따르지 여부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재량에 속한다. 청구법인이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할 법적 근거나 비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0% 세율로 결정한 품목번호를 신뢰하지 않고 청구법인 마음대로 8%의 다른 품목번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무역통계 작성 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청구법인이 모듈화한 제품을 제3815호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관세사가 제시한 제8421호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제3815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제8421호로 수정·보정신고 하지 않았는지 등을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품목분류의 법리관계

1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225 판결

내지 세법상 부정한 행위 개념을 오인한 것이다. 쟁점물품을 제3815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제8421호에 분류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대구세관 내에서도 모듈화된 촉매제품을 제8421.39호의 여과기 완제품으로 분류한 반면, 관세평가분류원은 제8421.99호의 여과기 부분품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서로 달리 분류한 사례도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중국 수출자나 EU에서는 쟁점물품을 제3815호로 분류한 점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대만은 촉매제 설치, 운반 및 보호를 위한 촉매블록을 제3815호로 분류했고, 일본은 배연탈초 장치용 모듈로 조립된 허니콤 구조의 촉매조제품을 제3815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불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이 법규명령이 아닌 품목분류 유권해석 나아가 관세사의 품목분류의견을 부정한 행위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 ② ●

청구법인이 2011년 작성한 원산지소명서에 ‘모듈화된 촉매제’의 품목번호는 제8421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23. 3. 7.자 세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관세사와 협의내용상 “2022년도에 수입한 물품은 모두 모듈화하지 않은 허니콤 타입 제품이고, 그 이전에는 모듈을 수입한 적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어야 한다. 예컨대 원산지소명서의 은닉·폐기 또는 가장(假裝)행위가 행해졌어야 하나 2011년 6월경 작성한 원산지소명서에서 ‘모듈화된 촉매제’의 품목번호를 제8421호로 기재한 것은 단순히 품목분류 결정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산지소명서에 모듈화된 촉매제를 제8421호로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제8421호로 분류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을 하고 제3815호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려 했다고 미뤄 단정하는 것은 품목번호 신고의 법적 효력을 간과한 근거 없는 판단이다. 청구법인이 원산지소명서에 모듈화된 촉매제를 제8421호로 기재한 배경이 관세사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해 기재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전문가의 의견이라서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조작·은폐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경우에만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세관은 청구법인이 제8421호의 물품을 제3815호로 신고할 때 탈세 목적을 명백히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고과정에서 신고자료 속이기, 감추기, 없애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청구법인이

제3815호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송품장 등 과세자료를 어떻게 조작 또는 은폐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세관의 입증 노력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 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취지를 새길 필요가 있다.²⁰⁾

다음으로 조세심판원은 “세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관세사와 협의내용”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관세사의 민간 영역에서 협의한 정보는 단지 관세조사를 하기 위한 단서에 불과하다. 해당 단서를 가지고 2022년도에 모듈화된 제품이 몇 건을 통해 위장 수입됐는지 그리고 모듈화된 제품을 허니콤 타입으로 신고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과세자료를 어떻게 은폐 또는 조작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적의 흔적은 결정문에서 찾을 수 없다. 또한 제3815호와 제8421호의 세율 차이는 2023년의 경우 0%와 0.8%로 그 차이가 미미하고, 2024년부터는 모두 0%인 점, 또한 쟁점물품을 가공해 EU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관세포탈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 ③ ●

청구법인은 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에 비추어 2023. 3. 24.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제8421호로 수입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처분청이 2023. 3. 24. 수입검사를 진행하여 제3815호에서 제8421호로 직권 정정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조사한 2023. 6. 21.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현행 ‘신고납부제도’에서는 품목번호의 신고는 청구법인 자기 책임 하에 하면 된다. 모듈화된 제품을 제84류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촉매기능이 여전히 본질적인 특성이고 그 외 부품은 단지 보조적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면 제3815호로 수입신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세관의 직권시정을 통한 품목번호 변경 권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과연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품목분류는 ① 수입물품 성분이나 기능 등을 확인하는 사실관계 규명, ② 수입물품 성분이나 기능 등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영역, ③ 관세율표 법령의 적용·해석으로 이어진다. 특히 ②와 관련된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관점이나 이론 등이

2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틀렸거나 아니면 다르다고 이를 비난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품목분류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그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로 족하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의 신고오류 및 수정·보정신고 불이행을 부정한 행위의 근거로 든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 ④ ●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 전까지 모듈화 여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촉매제와 쟁점물품을 칭하여 부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방문조사 시 확보한 '수입 진행 일정.xlsx' 파일에서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한 2020년경부터 '모듈완제품'으로 표기하고 SCR촉매제는 '단품'으로 표기하고 있어 두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모듈완제품과 단품을 구분해 관리했다는 사실 역시 부정한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재고관리나 회계처리 목적상 모듈완제품과 단품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 하에 구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할 때는 완제품과 단품 구별 없이 통칭하고 실제 관리할 때는 구분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미뤄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듈완제품과 단품을 구분 없이 통칭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듈완제품을 단품으로 위장해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한편 세관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고의적으로 'MODULE'이라는 단어를 수입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보면 “품명이라 함은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하고,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 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품명은 송품장이 출처가 된다. 이 사건의 경우 'MODULE' 기재 여부가 품목분류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송품장은 기본적으로 수입상대국의 수출자가 작성한다. 송품장에 'MODULE' 표시가 있으면 거래품명에 'MODULE'을 표시해야 하지만, 없으면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은닉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즉, 높은 수준의 은닉정도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은닉행위 또는 적극적 은닉 정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어야만 성립된다.²¹⁾ 송품장에 'MODULE'이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815호로 분류되기 위해 'MODULE'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 또는 쟁점물품을 총 122건 수입했음에도 일부 물품만 'MODULE'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행위가 아닌 소극적 행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송품장 대조 작업을 통해 쉽게 은닉행위를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는 'MODULE'이 표시됐음에도 수입자가 송품장을 위·변조해 'MODULE'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수입자와 수출자가 송품장에 'MODULE' 표시를 누락하자는 공모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세관과 조세심판원이 이러한 입증 노력 없이 모듈화된 제품에 'MODULE'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한 행위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VII. 맺는 말

품목분류 사건을 다룰 때는 첫째 사실관계를 은폐 또는 조작했는지, 둘째 규명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올바르게 법을 적용하고 해석했는지의 2가지 영역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 첫째 영역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조사부서가 해야 할 일이고 둘째 영역은 심사부서가 해야 할 일이다. 예컨대 조사부서가 수입가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법」 제113조 규정대로 “청구법인이 성실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예컨대, 쟁점물품이 동종동질물품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해 관세평가 제2방법을 적용해 그 차액을 탈세금액이라고 봐 형사처벌하는 것은 탈세의 개념을 오인한 것이다. 탈세 산정은 실제지급가격이 얼마인지에서 출발한다. 관세평가 제1방법은 실제 지급가격이지만 제2방법 이하는 공개시장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 관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사실관계 문제와 법 적용 문제를 구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사실관계에 있어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그에 따라 어떤 품목 번호로 신고할 것인지는 청구법인의 판단 영역임에도 관세사의 의견 또는 분류원의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한 행위의 전제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탈세할 목적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열거된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품목번호 사전 인식 여부나 세관의 시정요구 불응 및 'MODULE' 용어 수입신고서 누락 등의 소극적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본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실정법과 법리에 따른 엄격한 법해석 적용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열거된 부정한 행위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몇 호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않는 점도 문제가 있다.

제8405호[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해설 요지]

제8405호는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 (B) 수성가스(water gas) 발생기, (C) 습식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4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나, (I) 발생로 가스 발생기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II) 습식아세틸렌(water process acetylene)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습식 연료가스를 생산하는 기기다. 발생로가스는 1,000℃ 전후의 고온에서 석탄과 코크스에 공기와 증기를 작용시켜 열분해와 동시에 불완전연소를 일으켜서 제조되며 일산화탄소·수소와 질소 등이 혼합된 가스다.

(B) 수성가스(water gas)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발생로가스 발생기와 유사하게 습식의 연료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수성가스(water gas)는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혼합된 연료 가스의 일종으로 연료층(코크스)에 공기를 번갈아 가열하고 증기로 기화해 생산된다.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습식(water process)으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기다. 아세틸렌(Acetylene)은 알카인(Alkyne) 계의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합물로 화학식은 C_2H_2 다. 연소 시에 매우 많은 열을 내놓기 때문에 용접 등 높은 온도가 필요한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에는 산소발생기와 에틸렌가스 발생기(ethylene generator)가 있다. 산소가스는 용접, 절단, 제철산업, 전자공업, 도자기 제조, 의료용 호흡, 양식장 또는 활어 등 다양한 곳에 많이 이용된다. 에틸렌가스는 알켄(Alkane)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를 가지는 물질로 화학식은 C_2H_4 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자 수많은 고분자 화합물들의 시발점이 된 물질로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주로 쓰인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발생로가스 발생기, 수성가스 발생기, 산소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에틸렌가스 발생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제8405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고 번역하고 있으나 영문에 “any kind of gas”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는 어떤 가스(호의 용어에 규정한)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로 번역해야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수소발생장치를 HSK 제8405.10-2000호(수성 가스 발생기)로 분류한 사례는 오류로 판단되니 주의를 요한다.

제8405.10호의 용어에 ‘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한 이유는 제8405호의 기기들은 산소와 반응해 상당한 열량을 발생하므로 연료가스나 조명가스, 용접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고체연료로부터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안정장치 등의 보조기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 보조기기가 가스 발생기와 함께 제시하고 또한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면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기 분류규정) 또는 제4호(기능단위기기 분류규정), 제16부 주 제5호를 적용해 제8405호로 분류한다. 분리해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2호를 적용해 각 열거된 호(예 : 제8421호의 ‘청정기’)에 분류한다.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으로 가스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기기다. 특히 (D) 소그룹의 기기에 포함되는 산소발생기는 그 생산 또는 제조 방법이 다양하나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을 좁게 해석할 경우 제8405호에서 제외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습식(water process) 방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분류 사례가 있다.

또한 수소발생기에 대해 HSK 제8405.10-2000호와 HSK 제8405.10-9000호로 나뉘어져 있는 사례를 정리해야 하는데(부분품의 분류에도 문제가 발생) 필자의 견해로는 HSK 제8405.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8405호는 호의 용어에 규정한 대로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 (B) 수성가스(water gas) 발생기,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의 4개의 소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크게 (I) 발생로가스 발생기 또는 수성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II) 습식아세틸렌(water process acetylene)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호에는 어떤 가스[예 : 발생로가스(producer gas)·수성가스(water gas)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예 :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가 포함된다. 다만 실제로는 버너만 부착하게 돼 있는 아세틸렌가스 발생기는 램프의 일종이므로 제9405호로 분류한다.

※ 제9405호 (I) 조명기구 : 모든 광원[예 :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습식 연료가스를 생산하는 기기다. 발생로가스는 1,000℃ 전후의 고온에서 석탄과 코크스에 공기와 증기를 작용시켜 열분해와 동시에 불완전연소를 일으켜서 제조된다. 즉, 두꺼운 연료층은 불판 위에서 연소되고 공기와 증기의 유량은 연소가 불완전하도록 조절되며 물의 분해 작용과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긴 일산화탄소·수소와 질소[발생로가스(producer gas)]의 혼합 가스가 발생한다.

발생로가스 기기는 일반적으로 내화성의 벽에 불판이 들어 있거나 수냉식으로 된 이중벽과 흡인이나 송풍에 의해 공기(또는 공기와 증기)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장치를 갖춘 밀폐식의 실린더(cylinder)로 구성돼 있다.

참고로 발생로가스 제조 원리를 ‘가스화’라고 한다. 가스화란 고체나 액체 상태인 물질을 기체로 만드는 조작을 말하나, 일반적으로는 고체나 액체 연료로부터 기체 연료를 제조하는 조작 또는 반응을 말한다. 고체나 액체 연료에 공기, 산소, 수증기,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화제를 단독 또는 서로 배합해 고온에서 작용시켜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기체 연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을 ‘가스화가스’라고 하며 발생로가스, 수성가스, 도시가스 등이 있다.

다음의 수성가스도 가스화가스의 한 종류로 적열(赤熱)된 코크스에 수증기를 작용시켜 얻은 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연료가스의 일종이다.

(B) 수성가스(water gas)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앞서 설명한 발생로가스 발생기와 같이 습식의 연료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수성가스(water gas)는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혼합된 연료 가스의 일종으로 연료층(코크스)에 공기를 번갈아 가열하고 증기로 기화해 생산된다.

수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보다 훨씬 높은 열량을

갖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수성가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유용하다. 수성가스는 공기를 불어 넣었을 때 얻는 발생로가스로부터 분리돼 수집되거나 그러한 두 가지의 가스가 혼합된다.

(A), (B) 그룹의 발생로가스 발생기와 수성(water)가스 발생기는 다 같이 여러 가지의 고체연료[예 : 석탄·코크스(coke)·목탄·나무·식물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연소시키도록 제작돼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발생로가스나 수성(water)가스는 먼지·타르(tar)·황화물(sulphurous compound) 등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때에 따라서는 재가열되거나 냉각된다. 따라서 이 기기들은 청정기·냉각기·건조기·재열기(reheater) 등의 보조기기가 부착돼 있다. 이들 보조기기가 가스 발생기와 함께 제시하고 또한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면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기 분류규정) 또는 제4호(기능단위기기 분류규정)를 적용해 제9405호로 분류한다. 당연 가스발생기와 분리해 제시된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예 : 제8421호의 ‘청정기’)에 분류한다.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는 습식(water process)으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기다. 아세틸렌(Acetylene)은 알카인 계열의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합물로 화학식은 C_2H_2 다. 공기 중에서 태울 경우 그을음을 내며 타고 연소 시에 매우 많은 열을 내놓기 때문에 용접 등 높은 온도가 필요한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한때 카바이드(carbide)를 사용해 아세틸렌가스를 만들어 과일을 숙성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아세틸렌가스는 식물의 노화·성숙을 돕는 호르몬으로 작용해 덜 익은 과일을 익히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아세틸렌가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탄화칼슘을 이용한 제조법과 탄화수소 분해를 이용한 제조법으로 나뉜다.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는 일반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물로 밀폐한 가스저장기로 구성되며, 가스가 충전돼 방출될 때 이 가스저장기의 움직임이 가스발생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해 준다. 이 발생장치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1) 물 속에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 덩어리를 간헐적(intermittent)으로 침입시키는 것
- (2) 물에 탄화물(carbide)을 서서히 첨가하는 것
- (3) 탄화물 위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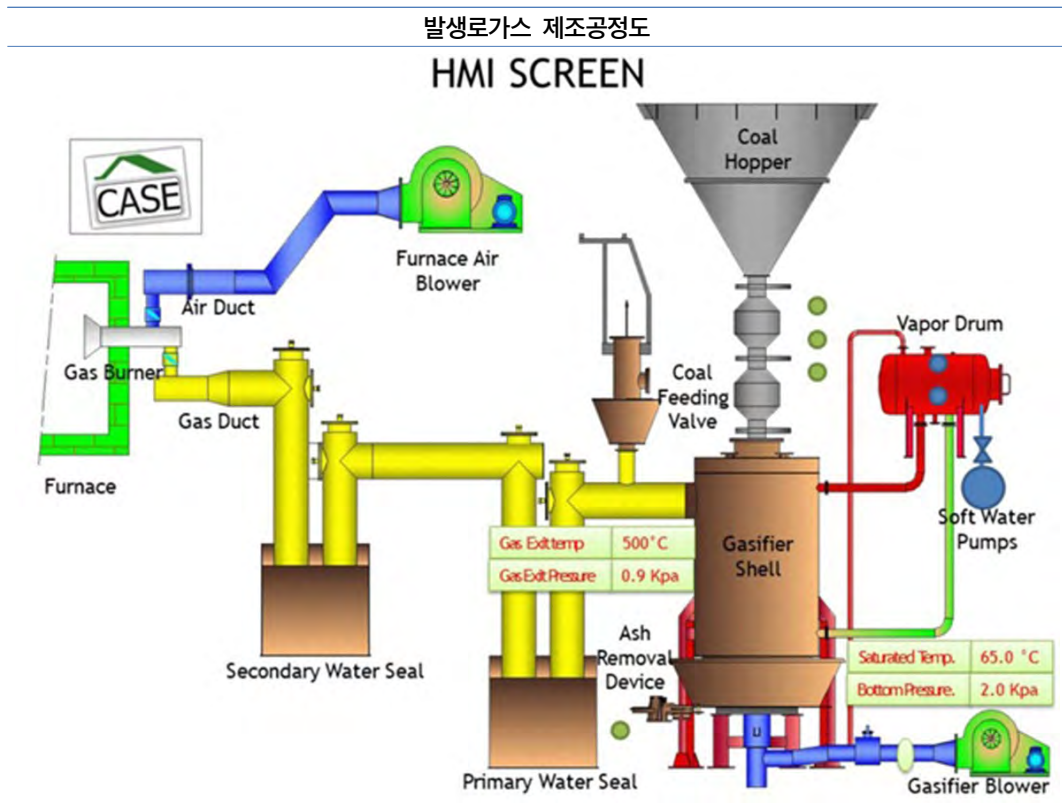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소그룹의 기기로 “그 밖의 것에는 산소발생기(예 :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예 :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

산소가스는 질소가스, 아르곤가스, 탄산가스와 동일하게 액화가스에 속하는 비활성기체로 현재 산소가스는 우리 생명체(사람,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액화가스이며 용접, 절단, 제철산업, 전자공업, 도자기 제조, 의료용 호흡, 양식장 또는 활어 등 다양한 곳에 많이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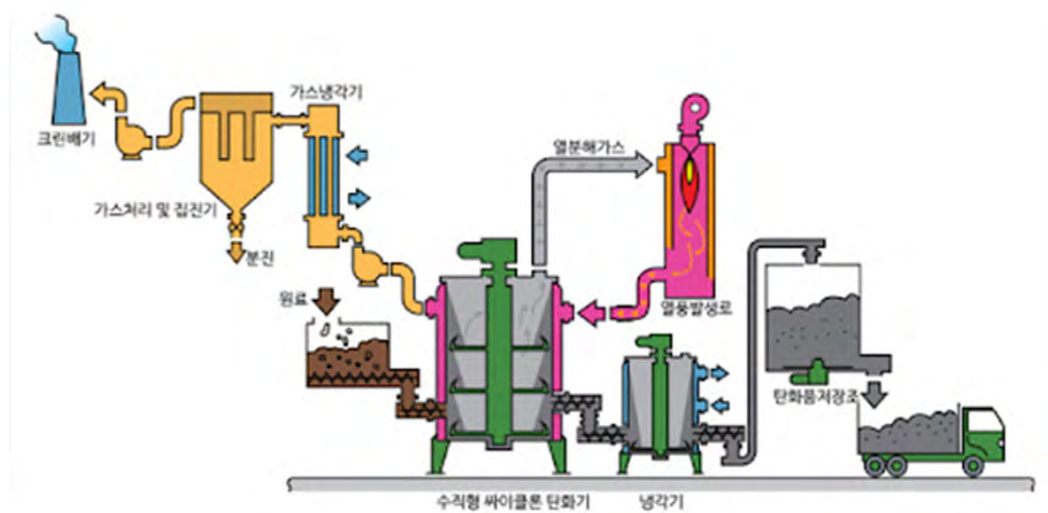
에틸렌의 정식 명칭은 ‘에텐(Ethene)’으로 알켄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를 가지는 물질로 화학식은 C_2H_4 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자 수많은 고분자 화합물들의 시발점이 된 물질로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를 만드는 핵심 재료로 주로 쓰인다. 현재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납사(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을 생산하고, 이것으로 폴리에틸렌과 같은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에틸렌가스는 LPG 가스 용접·절단에 사용되기도 하며 식물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 바나나, 키위, 아보카도 등 수확 후 후숙이 필요한 과일을 후숙하는 데도 쓰인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발생로가스 발생기, 수성가스 발생기, 산소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등이 있다.

■ 제8405호의 다양한 기기



발생로가스와 보조기기 구성도



발생로가스 플랜트	수성가스 플랜트	습식아세틸렌 제조설비
습식아세틸렌 제조 플랜트	습식 산소발생기	

■ 제8405 소호의 구성

제8405호는 호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 ①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특정 소호로 규정하고, ② 이들 기기의 부분품을 소호에 규정한 총 2개 소호로 구성돼 있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8405.1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405.90 - 부분품

■ 제8405호 HSK의 구성

HSK는 제8405.10 소호의 경우 호의 용어에 규정한 물품 중 ① 발생로가스 발생기, ② 수성가스 발생기와 거래량이 많은 ③ 산소발생기를 특정 HSK로 세분화했고 제8405.90 부분품 소호 역시 이를 그대로 반영해 세분화했다.

II. 관련 규정

제8405호의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6부 주 제3호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4호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5호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 제8407호의 용어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 참고자료

○ 수성가스 발생로(water gas generator)

탄소 또는 탄화수소와 수증기의 반응은 전체로서 큰 흡열인데, 이 열을 공급하기 위해 간헐식에서는 공기를 들여보내 연료층의 온도를 올리는 블로 조작이 있고, 연속식에서는 수증기와 함께 산소를 들여보내고, 외열식(外熱式) 가스화에서는 노벽 바깥쪽에서 가열하며, 그 밖에 주입 수증기 또는 가스를 과하게 가열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간헐식에는 석유의 열분해 가스로 수성가스의 발열량을 높이는 증열 수성가스 발생로(수성가스 증열)가 있고, 그 밖에 중간 크기의 덩어리 탄을 원료로 해 건류탑을 부착시킨 혼성 가스를 제조하는 발생로, 예를 들면 GI 가스 발생로, 툴리(Tully) 가스 발생로 등도 여기에 속한다. 연속식은 대부분 산소와 수증기를 동시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용회식(溶灰式) 가스 발생로, 빈클러 가스 발생로, 코퍼스-토체크 가스 발생로, 파우저-몬테카티니 가스 발생로, 텍사코 가스 발생로, 셀 가스 발생로, 오토-룸멜 가스 발생로, 루르기가압 가스로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외열식에는 디디에-부비아크(Didier-Bubiag) 합성 가스발생로, 코퍼스(Koppers) 합성 가스 발생로가 알려져 있다.

○ 아세틸렌 제조법

탄화칼슘을 이용한 제조법의 원리는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기 쉬우며, 반응 시 발열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반응식은 $\text{CaC}_2 + 2\text{H}_2\text{O} \rightarrow \text{C}_2\text{H}_2 + \text{Ca(OH)}_2 + 33.07\text{kcal/mole}$ 이다. 탄화칼슘 1kg은 약 230~290ℓ의 아세틸렌을 발생하고, 이때의 발열량은 약 400kcal에 달한다. 탄화칼슘을 이용한 아세틸렌 제조법은 건식과 습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습식은 다량의 물에 탄화칼슘을 투입해 아세틸렌을 발생하는 방법이고, 건식은 탄화칼슘 덩어리 또는 분말에 물을 분사시켜 아세틸렌을 얻는 방법이다. 습식의 경우 다량의 수산화칼슘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에, 건식이 더 선호되는 추세다.

탄화수소 분해를 이용한 제조법은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등의 탄화수소를 분해해 아세틸렌을 얻는 방법이다. 메테인을 사용할 경우 반응식은 $2\text{CH}_4 \rightarrow \text{C}_2\text{H}_2 + 3\text{H}_2 - 95.5\text{kcal/mole}$ 이다.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탄화수소 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따라서 이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필요하다.

※ 아세틸렌은 가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아세틸렌과 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 가스는 넓은 폭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기 중에 2.5 ~ 81% 포함돼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III. 주요 쟁점사항

제8405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8405호의 범주에 대한 유의사항은?
- 2) 호의 용어에 '정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한 이유와 분류 적용 규정은?
- 3)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룹의 범주와 문제점은?
- 4) 제8405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1) 제8405호의 범주에 대한 유의사항은?

제8405호의 용어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다. 이와 관련해 제8405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든 가스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제8405호의 성격이 기능별 분류체계이므로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 아세틸렌가스 발생과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호의 용어에는 분명 가스 생산기의 종류를 한정했으나 해설서에 호의 범주와 관련해 이들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외에 “모든 가스”라고 번역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해설서의 영문에는 “any kind of gas”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종류의 가스”다. 여기서 어떤 종류란,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가스나 이들 가스의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기기(일체식 발생장치 포함)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호의 범주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제8405호의 성격이 기능별 분류체계이므로 가스의 용도(산업별)에는 상관이 없다고 해설하고 있다.

둘째 제8405호 해설서에 (A), (B) 소그룹에 대해 “발생로가스 발생기와 수성가스 발생기는 다 같이 여러 가지의 고체연료[예 : 석탄·코크스(coke)·목탄·나무·식물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연소시키도록 제작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체나 액체에서 이들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체에서 이들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셋째 제8405호 해설서에 제9405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아세틸렌가스 램프의 경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버너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기기도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제8405호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

넷째 제8405호 해설서에 (A) 발생로가스 발생기는 “공기(또는 공기와 증기)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장치 … <중략> … 공기와 증기의 유량은 연소가 불완전하도록 조절 … <중략> … 물의 분해작용과 … <후략>”로 이처럼 발생로가스는 습식(water process)으로 제조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B) 수성가스 발생기는 “공기와 물이나 증기를 장치 내에 번갈아 넣어 넣도록 … <중략> … 물을 넣어 넣었을 때… <후략>”로 이처럼 습식(water process)으로 제조된다고 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문헌에도 가스발생로(gas producer)란 “고체연료의 가스화에 사용되는 노”로 수성가스발생로(water gas generator)를 “적열탄소에 수증기를 반응시켜 가스화에 사용되는 노” 등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호에는 어떤 가스(호의 용어에 규정한)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로 번역해야 타당하며, 다음의 결정 사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최근에 발생로가스는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중유 등으로 대체), 수성가스 생산은 원료의 경우 처음의 중간 정도 덩어리 코크스에서 미세분탄, 가스상 및 액상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경향이 현저해 석유화학플랜트 등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호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수소발생장치의 HSK 제8405.10-2000호 분류 사례 ●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5.10-2000호
품명	REFORMER
	○ 물품 개요 - Burner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Tube array에 700 ~ 900℃의 열을 공급하고 화석연료(천연가스, 메탄올, 석유 등)로부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 규격 : L268 × W172 × H334cm - 구성 요소 ① Burner : tube array에 열 공급 ② Tube array : Fuel in for reforming으로 주입된 연료(도시가스)가 tube array를 지나면서 tube array 내부에 있는 촉매(니켈)와 열 교환해 개질반응이 일어남 ③ shell : reformer의 외형(내외부 단열 및 가스 누출 방지) ④ bottom structure : reformer의 하위 단으로 연료(수소)가 2차 부분품으로 나가는 통로 ⑤ Base : Reformer의 단열 및 지지를 위한 frame

물품 설명 ○ 관련 이미지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8405.10호에는 ‘수성가스 발생기’가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 발생로가스(producer gas)·수성(水性)가스(water gas)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결정 사유

- ‘(A)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에 대해 “이 발생기(generators)는 일반적으로 불판(고정식·진동식이나 회전식)가 들어 있는 내화성의 내장이 되었거나 수냉식으로 된 이중벽과 흡인이나 송풍에 의하여 공기(또는 공기와 증기)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장치를 갖춘 밀폐식의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되어 있다. 두꺼운 연료층은 불판 위에서 연소되고 공기와 증기의 유량은 연소가 불완전하도록 조절된다. 물의 분해 작용과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생긴 일산화탄소·수소와 질소[발생로가스(producer gas)]의 혼합 가스는 이 장치의 상부에서 제거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B) 수성(水性)가스(water gas) 발생기’에 대해 “발생로가스 발생기와 유사하나 공기와 물이나 증기를 장치 내에 번갈아 불어 넣도록 제작되어 있다. 물을 불어 넣었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보다 훨씬 높은 열량을 갖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수성(水性)가스]다. 이 가스는 공기를 불어 넣었을 때 얻는 발생로가스로부터 분리되어 수집되거나 그러한 두 가지의 가스가 혼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도시가스와 수증기를 불어 넣어 수소를 발생시키는 수성가스 발생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10-2000호에 분류함.

2) 호의 용어에 ‘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한 이유와 분류 적용 규정은?

호의 해설에서 설명했듯이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는 산소와 반응해 상당한 열량을 발생하므로 연료가스나 조명가스, 용접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다양한 고체연료(석탄, 코크스, 목탄, 나무, 식물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로부터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안정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플랜트 수준의 기계를 분류하기 위해 제16부 주 제5호에서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machinery)·설비(plant)·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기계의 분류규정)와 제16부 주 제4호(기능단위기계 분류규정)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16부 총설에 (III)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의 범주에 대한 해설, (IV)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 (V) 조립되지 않은 기계(unassembled machine), (VIII) 이동식의 기계류(mobile machinery), (IX) 실험실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류와

장치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설 내용으로 이 규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정기뿐만 아니라 재가열하기 위한 재열기, 냉각을 위한 냉각기, 건조기 등의 보조기기가 부착돼 있다. 이들 보조기기가 가스 발생기와 함께 제시하고 또한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면 제16부 주 제3호(복합다기능 기기 분류규정) 또는 제4호(기능단위기기 분류규정), 제16부 주 제5호를 적용해 제8405호로 분류한다. 당연 가스발생기와 분리해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2호를 적용해 각 열거된 호(예 : 제8421호의 ‘청정기’, 제8419호의 ‘냉각기와 건조기’)에 분류한다.

3)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룹의 범주와 문제점은?

제8405호의 용어에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호의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에는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으로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기계가 분류된다. 해설서에 예시한 “산소발생기(예 :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ethylene generator)(예 :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도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으로 가스를 제조하는 기계여야 제8405호로 분류할 수 있다.

‘아세틸렌가스 발생기’를 호 해설서에 ‘(C)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 소그룹으로 표현하고 있고 습식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3가지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이란 물과 반응 또는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1) 물 속에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 덩어리를 간헐적(intermittent)으로 침입시키는 것
- (2) 물에 탄화물(carbide)을 서서히 첨가하는 것
- (3) 탄화물 위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

산소는 모두가 알다시피 화학적으로 매우 활성이 높은 원소다. 금·백금·은 등의 귀금속이나 비활성 기체, 할로젠(플루오린 제외) 등과는 직접 반응하지는 않지만, 그 밖의 원소와는 직접 반응해 산화물을 만든다. 따라서 산소가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분리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산소 분리 방법이 개발돼 왔다.

- ① 촉매를 이용해 표백제와 물과 반응시켜 산소 발생
- ② 물을 전기분해해 산소와 수소를 발생(수소의 폭발성으로 사실상 사용 안 함)
- ③ PSA(Pressure Swing Adsorption, 가압교대 흡착장치)를 이용한 산소 발생
- ④ 중공사막(Hollow Fiber)에 대한 물질들의 투과속도 차이를 이용해 산소를 분리
- ⑤ 저온 냉각 분리법(공기를 냉각시켜 액체산소와 액체 질소로 분리)

문제는 ①, ②는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③, ④, ⑤는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이라 주장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재 상업적 목적의 산소발생기체는 ③, ④, ⑤의 방법이 대부분인데 이들 기계가 이 호에서 제외된다면 제8405호로 분류될 만한 기계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물론 공기 중에는 수분(H₂O) 또는 수증기가 일부 있고 이들 기계는 고순도의 산소를 얻기 위해 수분을 제거해야 하는데 수증기 제거를 습식(water process)의 방법으로 인정한다면 이들 기계도 이 호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고체 화학수소화물에 염산을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하는 장치로 습식(water process)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습식(water process) 방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소발생기에 대해 HSK 제8405.10-2000호와 HSK 제8405.10-9000호로 나뉘어져 있는 사례를 정리해야 하는데(부분품의 분류에도 문제가 발생), 필자의 견해로는 HSK 제8405.10-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수분 제거 방법이 있는 수소발생기 분류 사례 ●

시행일자	2021년 4월 26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5.10-9000호
품명	Hydrogen Generator(수소발생기)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돼 있는 고체 상태 화학수소화물(연료, 수소화붕소나트륨)에 작용제(염산 :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용액)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 - 규격 : L480 × W200 × H200mm - 적용 분야 : 반도체 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 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 분야 - 주요 구성요소 • 반응기 : 고체 화학수소화물 연료가 반응해 수소를 발생 • 에이전트 탱크 : 수소 발생을 위한 작용제 보관(에이전트) • 냉각장치 : 반응을 통해 발생된 수소 냉각 • 수분트랩 : 냉각 후 응축된 물 분리 • 필터 : 수소에 포함된 수분 흡착 • 압력조절기 : 수소 공급 압력 조절 • 펌프 : 작용제 이송 • 밸브 : 수분트랩 내부 물 배출 • 수소공급포트 : 수소 공급을 위한 튜브 연결 • 제어기 : 펌프, 밸브, 팬 등 제어(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통신)

◦ 관련 이미지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나 수성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 발생로가스·수성가스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결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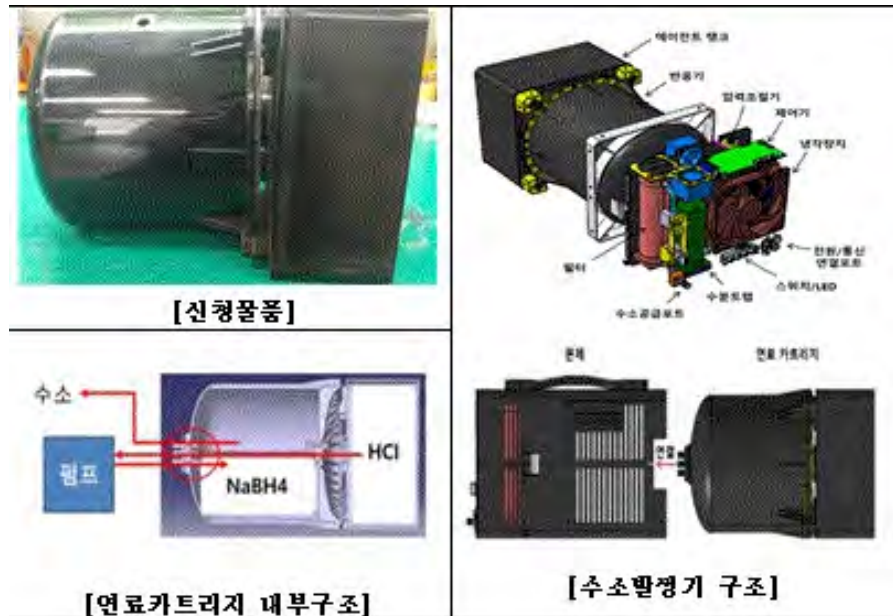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 그룹에서 “그 밖의 것에는 산소발생기(예 :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예 :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와 연료 카트리지로 구성돼 있으며 카트리지 형태로 보관돼 있는 고체상태 연료에 작용제를 반응시켜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10-9000호에 분류함.

● 수소발생기 부분품을 HSK 제8405.90-9000호로 분류 사례 ●

시행일자	2021년 5월 21일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8405.90-9000호
품명	Parts of Hydrogen Generator; 연료카트리지(Hydrogen)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제 연료카트리지로 ①고체연료인 수소화붕소나트륨(NaBH_4) 이 충전되어 있는 반응기와 ② 작용제인 염산(HCl)이 충전돼 있는 에이전트 탱크로 구성돼 있음. - 작동 원리 : 본체 펌프의 작동으로 에이전트 탱크에 있는 작용제가 라인을 통해 반응기로 이송되고, 반응기 내에서 고체연료와 작용제가 반응해 수소 생성됨. - 반응식 : $\text{NaBH}_4 + \text{Agent}(\text{HCl}) \rightarrow \text{NaBO}_2 \cdot x\text{H}_2\text{O} + 4\text{H}_2$

○ 관련 이미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세율표 제8405호에는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城)가스 발생기, 에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8405.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결정 사유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가스[예 : 발생로가스(producer gas)·수성가스(water gas)와 이들의 혼합가스나 아세틸렌가스 등]의 일체식 발생장치가 포함되며 발생하는 가스의 용도에는 상관없다. 다만, 그 용도를 예를 들면, 조명용·공업적 가열용·가스엔진의 공급용·금속의 용접용과 절단용·화학합성용 등이 있다. … <중략> … (D) 그 밖의 습식가스 발생기로 산소 발생기(예 :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것)와 에틸렌가스 발생기(ethylene generator)(예 : 특정 화약품에 대한 물의 작용을 이용한 것)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해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 가스발생기의 본체·불판·가스 수집기와 물과 카바이드(carbide)의 혼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반응기와 에이전트탱크로 구성된 연료카트리지로 고체연료와 작용제가 반응해 수소를 생성하는 수소발생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5.90-9000호에 분류됨.

4) 제8405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제8407호의 용어에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내연기관에 대해 “이들 내연기관은 실린더(cylinder) 내에서 휘발유나 등유·알코올·수소·석탄가스·메탄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되는 가연성의 가스나 증기의 팽창력을 이용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가스 엔진을 예시하고 있다.

가스 엔진과 발생로가스(producer gas) 발생기와 일체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제8407호로 분류하나 발생로가스 발생기가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경우, 가스발생기는 항상 제8405호에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무스탕이 콩글리시?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무스탕’은 양가죽으로 만든 재킷이다. 겉으로는 무두질한 거칠거칠한 양가죽 안쪽이 드러나고 안감에는 곱슬곱슬한 양털을 그대로 살려 보온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 무스탕이란 이름은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다. 그렇다면 무스탕은 왜 무스탕이라고 불리게 됐을까?

1987년 겨울 한 유명 백화점에서 ‘무스탕 세무 점퍼’로 양가죽 옷을 판매하고 광고한 이후 무스탕이란 단어가 널리 퍼지게 됐다. 무스탕(Mustang)은 원래 북미 서남부에 서식하는 야생마다. 미국 북아메리카항공은 1940년 P-51 전투기를 개발하며 별칭을 무스탕으로 했다. 무스탕 전투기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 전투기로 이 전투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은 영하의 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쪽에 양털이 있는 고급 가죽 재킷을 입고 임무를 수행했다. 그 결과 ‘무스탕(전투기 조종사) = 안쪽에 양털 달린 재킷’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던 방한용 가죽 재킷이 민수용으로 유통되며 패션 재킷으로 자리 잡았다. 패션 재킷으로 제작되는 무스탕의 경우 진짜 양가죽을 이용하기보다는 플라스틱을 도포하고 이를 가죽처럼 가공처리해 의류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갈색계 진소매 상의로 ‘가죽의류’인 제4203.10-9020호로 신고했다.

먼저 본 물품의 경우 겉감은 편물 일면에 플라스틱이 도포돼 가죽의 질감이 나도록 가공됐고 안감은 파일 편물로 이뤄져 있다.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예 :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塗布)·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하는데,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해 분류한다.

■ 제5903호 해설서

(1) 침투·도포(塗布)·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도포(塗布)·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중략> ...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피복하지 않은 것

위 (2), (3)항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보통 제39류에 해당된다. ... <후략>

즉, 직물에 플라스틱이 도포된 물품은 도포된 것이 육안상 확인이 가능하고, 단단하지 않고 직물 일면에만 플라스틱이 도포된 경우 제39류가 아닌 제59류에 분류되는 물품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39류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 아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 ;
-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
-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mm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
-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따라서, 본 물품의 경우 전면 부분은 완전 개폐할 수 있고, 스탠딩 칼라에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형태의 갈색계 상의로 일면에 플라스틱이 피복된 편물의 겉감과 파일 편물로 된 안감을 접착한 것으로 제5903호의 원단으로 만든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13.00-1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울)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울)
MENS MUSTANG	4203.10-9020 (FCN1 0%)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6113.00-1000 (FCN1 0%)

바나나 한 개를 86억 원에 구입한 사업가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접착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 설치미술 작품(바나나 한 개)을 620만 달러(약 86억 5,000만 원)에 낙찰받은 사업가가 있어 화제가 됐다.

작년 11월 미국 매체(NYT) 보도에 따르면 작품을 낙찰받은 이는 중국 출신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선이다. 경매에 올라온 것은 이탈리아 출신 작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이다. 하얀 벽에 바나나를 접착테이프로 붙인 이 작품은 작가 카텔란이 2019년 미국 마이애미 아트페어에서 처음 선보인 것으로, 미술 시장의 현실을 조롱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경매 작품에 전시된 바나나는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한 과일 가판대에서 35센트(약 500원)에 산 브랜드 돌(Dole)의 제품이라고 한다.

낙찰자 저스틴 선은 바나나와 접착테이프 한 개씩, 썩은 바나나 교체 방법을 알려주는 설치 안내서, 진품 인증서를 받았다.

저스틴 선은 경매에 낙찰받은 지 약 일주일 후에 과일 노점상에게 감사하기 위해 매대의 바나나 10만 개를 사들이기로 했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공짜로 나눠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홍콩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작품의 핵심인 바나나를 떼어내 먹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관세율표에서 화제(話題)가 된 작품 속 설치 미술품 중 바나나는 관세율표 제0803호 ‘바나나 [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된다. 또 바나나를 중심으로 한 설치 미술 작가의 작품은 관세율표 제9701호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9701호 해설서 (B)호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식물·그 밖의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 <중략> … 품질·가격면에서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데 진정 예술품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14호_2025.1.13.

최신개정법령

고시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시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04호, 2025. 1. 8.)

◇ 개정 이유 ◇

- 선박연료공급선에 2가지로 적용되는 이용금지 제재를 감경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여 규제 완화(20일 및 30일 → 20일)
- 업무정지 제재에 대한 경고 횟수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미규정된 3차 초과 제재 대해서도 3차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업무절차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 본 고시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
 - 「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을 개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업종별 고시에 대해 기존에는 일부만 적시
 - 기존에 누락된 고시명들을 모두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
- 용어정비(제3조, 제4조 제1항, 제10조)
 - (제3조 : 정의) 제10호 구명뗏목정비업의 정의를 해당 해양수산부고시[선박구명설비기준]에 맞추어 개정
 - (제4조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1항 본문, 'FAX'를 '팩스'로 개정
 - (제10조 :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갱신'으로 개정
 - (제12조 : 업무정지 등) 제2항 제3호 본문 내 '1년간'을 '1년 이내에', 제7항 본문 내 '절사'를 '버림'으로 개정
- 근거규정 정비 및 신고기한 등 명확화(제4조 제5항, 제10조 제1항)
 - (제4조 제5항) ①등록사항 변동신고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반영, ②변동신고의 기한을 '지체없이'로 명시하여 근거법령과 일치
 -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제5항'에서 '제231조 제6항'으로 개정
 - (제10조 제1항) ①갱신신청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반영, ②사전 통지의무 내용(「관세법 시행령」제231조 제5항)을 본 고시에 삽입, ③갱신 처리 시 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여 절차 명확화
 -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 제3항'에서 '제231조 제4항'으로 개정
- 규제 완화(제11조)
 - (제11조 제1항) 부족적재와 미적재로 적발된 급유선의 업무정지 제재를 20일로 일원화*하여 규제 완화
 - * 기존에는 부족적재의 경우 20일, 미적재의 경우 30일로 업무정지 적용
-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12조)
 - (제12조 제2항)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 횟수 산정 방법 구체화*
 - * 최종 적발건의 경고처분을 포함 경고 3회 시 업무정지 1회 적용
 - (제12조 제3항) 업무정지의 3차 초과 시(4차, 5차 등) 3차 제재와 동일하게 30일로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은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73호, '19.12.2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명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73호, '19.12.20.)

2. 개정 사유

- 자율관리 보세구역 절차 생략 대상 확대 등 운영인 편의 제고
 -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업무 확대
 -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대상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제58조의2에 따른 표시작업 추가
 -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 간소화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원산지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 보세사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사유 구체화 및 업무대행 가능 기간(2개월 이내) 명시 등 보세사 업무대행 절차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가.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 간소화(제4조)
 -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 절차 간소화
- *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갱신 신청기한' 및 '심사기간'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갱신

신청기한 및 심사기간으로 일치

나.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정비(제5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취소 사유로 정비

- * 1) 법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84조 제2항제1호)
- 2)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제184조 제2항 제2호)

다. 자율관리보 세구역의 절차 생략 관련 규정 정비(제7조 제1항 제1호)

-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대상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제58조의2**에 따른 표시작업 추가

- * 전자파 등급 표시(무선설비등), ** 적합성평가 표시(방송통신기자재등)

-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

라.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절차 생략 대상 업무 확대(제7조 제1항 제2호)

-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 제1항)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혜택(절차 생략) 확대

마. 보세사 업무대행 사유 및 절차 정비(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 보세사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사유* 및 기간(2개월 이내)을 구체화하고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서식 신설

- * 보세사가 휴가·교육·해고·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바.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중복 규정된 보세사의 행정제재 및 처리절차 삭제(제11조 제1항·제2항)

사. 국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신청 및 갱신), 제7조(절차생략 등), 제8조(절차생략 등의 금지)
- 제9조(운영인 등의 의무), 제10조(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제12조(관련서류의 보존), 제13조(재검토기한)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 근거 조항
제1조 (목적)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항
제3조 (지정요건)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3항·제4항
제4조 (지정신청 및 갱신)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2항 -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1항·제3항
제5조 (지정취소 사유 등)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6항 -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2항제3호
제7조 (절차생략 등)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항 -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3항
제8조 (절차생략 등의 정지)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3항
제9조 (운영인 등의 의무)	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제1항·제5항 -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3항
제10조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3항
제11조 (행정제재)	영 제184조(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제3항
제12조 (관계서류의 보존)	영 제3조(장부 등의 보관) 제1항제3호가목

5. 시행 일자 : 2025. 0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 서주원 사무관(042-481-7945), 이재민 주무관(042-481-7901)
- 제출기한 : 2025.1.28.
- 제출방법 : 이메일(grim38317@korea.kr), 팩스(042-481-7937)

■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0호, '24.4.1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훈령 제2320호, '24.4.12.)

2. 개정 이유

- 충청도 지역의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관할지역 기업지원 전담부서를 인접 세관인 평택세관으로 조정 (제6조)
 - * 천안세관·청주세관(충주지원센터를 포함)·대전세관 관할지역의 기업지원 업무를 서울세관에서 평택세관으로 조정

3. 시행 일자 : 2025. 1. 00.

4.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담당자 : 김수미 사무관(042-481-3211), 배윤지 주무관(042-481-3281)
- 제출기한 : 2025.1.16.
- 제출방법 : 내부메일, 전자우편(soybae@korea.kr)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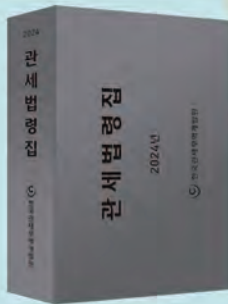


2024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수출입 통관 업무의 백과사전

세율 및 개정 고시 반영, WTO1가 수록기준 변경, 간이징액환급률표 등 수록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상·하권 p.4,984 | 120,000원



2024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2024년 4월 1일 기준 개정 법령 수록, 관련 고시까지 한눈에 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 p.1,728 | 60,000원



무역금융범죄의 사이클

무역금융범죄 139개 유형 심층분석

이호능·천홍욱·황인욱 공저 | p.590 | 40,000원



2023 관세환급실무

관세환급 실무중심 사례 소개

윤철수·이상학 공저 | p.603 | 50,000원



2023 관세형사법

관세무역 적법절차 준수 지침서

박영기·조재웅 공저 | p.896 | 60,000원

온라인 도서 구매 10% 할인

구매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